

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「지하수법」 개정 건의안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4.9.15

제안자 :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
원인조사 및 안전대책
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주문

- 서울시의 경우 도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싱크홀 (도로함몰, 침하, 동공 등 포함)의 원인 중 지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약 15%를 차지하고 있어,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「지하수법」은 일 100톤 초과 지하수 개발·이용 시만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쳐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 15미터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「지하수법」 개정을 건의함

2. 제안이유

- 현행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하면 21층 이상 10만 m^2 이상의 건축물은 일 30톤 이상, 지하철 역사, 터널, 전력구, 통신구 등은 일 30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될 경우만 지하수 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토록

규정하고 있고,

-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는 “지하수영향조사”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따라서, 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 등 지하수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도시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의회는 1일 양수능력에 상관없이 지하 15미터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“지하수영향조사”를 의무화하도록 「지하수법」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, 「지하수법시행령」, 「지하수법시행규칙」
- 나. 기타사항 : 없음

4. 이송처

- 가. 국회 : 국토교통위원회
- 나. 정부 : 국무총리실, 국토교통부

5. 첨부 :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「지하수법」 개정 건의안

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「지하수법」 개정 건의안

- 서울시의 경우 도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싱크홀(도로함몰, 침하, 동공 등 포함)의 원인 중 지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약 15%를 차지하고 있어,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.
- 현행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하면 21층 이상 10만 m^2 이상의 건축물은 일 30톤 이상, 지하철 역사, 터널, 전력구, 통신구 등은 일 300톤 이상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경우만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,
-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는 “지하수영향조사”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따라서, 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 등 지하수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도시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이에 서울시의회는 1일 양수능력에 상관없이 지하 15미터 이

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“지하수영향조사”
를 의무화하도록 「지하수법」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.

2014. 9. 15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

[붙임] 1. 「지하수법」 일부개정(안)

[붙임]
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(안)

□ 지하수법

현 행	개정(안)
- 신설 -	<p>제7조의4(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)</p> <p>① <u>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를 하려는 자</u>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지하수영향조사 심사 등은 제7조 2항부터 4항까지의 지하수 개발·이용 허가절차를 준용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·평가기준, 지하수영향조사의 작성지침·작성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
□ 지하수법 시행령

현 행	개정(안)
- 신설 -	<p>제8조의3(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 신청 등)</p> <p>① 법 제7조의4에 따른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굴착도면 및 위치도2. 지하수영향조사서3. 지하수 유출예상량 산출근거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·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</p>

- 신설 -	<p>제11조의2(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·조사방법 등)</p> <p>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·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의2과 같다.</p> <p>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.</p>
--------	--

- 신설 -	<p>⇒ 별표1의2, 별표2의2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변화 및 유출지하수 저감방안 · 유출지하수로 인한 인근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, 침하 가능성, 지반안정성 등 검토
--------	---

□ 지하수법 시행규칙

현 행	개정(안)
- 신설 -	<p>제8조의3(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 신청 등)</p> <p>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지표로부터 15m 이상 굴착한 경우를 말한다.</p>